

[토론회 취재요청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손배가압류를 통해 본 가압류
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23. 11. 30. 목요일. 오후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박주민, 우원식,
이탄희 의원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손잡고,
전국금속노동조합
문의 : 손잡고(02-725-4777, 010-7244-5116,
sonjabgo47@gmail.com)

- 정론직필을 향한 귀 언론사와 언론 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손잡고는 금속노조,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박주민, 우원식, 이탄희 국회의원,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과 함께 다가오는 11/30(목)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노동자 손배가압류를 통해 본 가압류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노동권을 행사한 개인을 옥죄는 손배가압류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짐에 따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반대하며 대통령 거부권이 논의되는 가운데, 한국사회에서 노동권 행사가 극단적으로 제한되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이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재차 발생했습니다.
- ‘손해배상을 사유로 한 가압류’이지만, 본안소송인 손해배상소송조차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된 가압류는 ‘소명절차’가 별도로 없어 손해사실을 입증하지 않았음에도 집행된 점, 사실상 전원에 해당하는 13명 조합원 개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부동산을 넘어 전월세 보증금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 많은 쟁점을 담고 있습니다.
- 이에 옵티칼 사례를 통해 노란봉투법의 필요성과 나아가 가압류 제도의 문제점까지 두루 살피고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귀 언론사와 언론노동자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 배경

1.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합원 10명에게 4억원의 가압류가 결정됨.

- 5명은 부동산을 5명은 전월세보증금을 대상으로 함. 나머지 3명은 당사자명의로의 부동산 또는 보증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실상 13명 조합원 전원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짐.

2. 위 가압류는 다음의 논점을 안고 있음.

1) 첫째, 가압류 사유의 정당성 문제.

- 회사는 '철거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사유로 거론하고 있지만, 철거는 시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즉, 허가받지 못한 철거를 시도한 것으로 그 손해의 책임은 노동조합이 아닌 철거 시도를 결정한 회사에 있다고 볼 것임.

2) 둘째, 가압류 대상은 적합한지의 문제.

- 회사는 노동조합이 아닌 조합원 개개인 전부를 가압류 대상으로 삼고 있음.

- 그러나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른 행위를 개인에게 묻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실제 조합원 개인들이 어떤 행위로 손해를 입었는지 인과관계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함.

3) 셋째, 손해산정.

- 회사는 4억원의 손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함.

- 실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4억원의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당사자들은 확인할 수 없음.

3.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가압류 사건은 가압류 제도의 특성을 이용한 대표적인 제도 남용 사례로 볼 수 있음.

1) 노동사건 가압류의 문제점

가압류는 신속성, 밀행성을 특징으로 하는 보전절차임

따라서 증명의 정도가 본안소송에 비해 완화되고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압류결정이 내려지므로, 사회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들은 담보제공을 하고 가압류결정을 받아 조합원 개인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2) 법원의 노동사건 가압류 결정의 문제점

노동사건 가압류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을 신중히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통상적인 재산권 분쟁 정도로 보고, 가압류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음. 노동자들이 가압류이의를 하더라도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심리하는 경우가 드뭄.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정의행위, 조합활동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구체적 소명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아야 함. 특히 노동조합 재산이 아닌 개별 조합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할 경우, 개별 행위자별로 불법행위,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소명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3)노동사건 가압류제도 규제의 필요성

가압류는 본안소송보다 간이한 방법으로 상대방의 처분권을 박탈할 수 있어 노동자들에 대한 압박이나 괴롭힘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노동3권 보장 측면에서 보았을 때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보다 규제의 필요성이 큰 절차임. 향후 쟁의행위, 조합활동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신청하는 가압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을 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손해배상에 따른 가압류의 경우, 실제 손해여부를 따지는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되는데 쟁의행위에 따른 손배의 경우 본안소송 1심만 평균 26개월, 길게는 84개월이 걸리기도 함.(쌍용차지부의 경우 가압류 해지까지 10년이 걸림, 상신브레이크지회의 경우 본안소송 승소 후 가압류가 풀리기까지 7년 걸림)

-따라서 가압류제도는 손해배상소송이 노동권을 행사한 노동자에게 가하는 압박의 효과를 보다 빠르고 손쉽게 얻는 도구로 남용될 수 있음.

4.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합원들에게 가압류가 제기되고 법원이 이를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은 노동권을 가로막는 기업의 손배가압류의 문제점을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따라서 노란봉투법 개정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임.

□ 세부진행

-.사회 :

김혜진(불안정노동철폐연대상임활동가,노조법2•3조운동본부공동집행위원장)
인사말

-. 기조발제 : 탁선호(변호사) 한국옵티칼하이테크를 비롯한 노동사건에서의 가압류 제기에서 볼 수 있는 특징과 문제들

-.토론 1. 노동사건에 적용된 가압류 제도에 대한 법무부 입장 - 법무부(섭외 중)

-.토론 2.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투쟁과 가압류 후 노동권 침해 실태 -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최현환 지회장

토론 3. 최장기간 노동사건 가압류 당사자 사례 - 쌍용자동차지부 김득중 지부장

토론 4. 노동사건에 민사 가압류제도를 적용하는 것의 함의 - 정영훈 부경대 법학교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손배가압류를 통해 본 가압류 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사회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 공동 집행위원장

발제 탁선호 변호사 | 한국옵티칼하이테크를 비롯한 노동 사건에서의 가압류 제기에서 볼 수 있는 특징과 문제들

토론 최현환 한국옵티칼 하이테크지회장 |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투쟁과 가압류 후 노동권 침해 실태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장 | 최장기간 노동사건 가압류 당사자 사례

정영훈
부경대 법학교수 | 노동사건에 민사 가압류제도를 적용하는 것의 함의

법무부 (섭외 중) | 노동사건에 적용된 가압류 제도에 대한 법무부 입장

일시 2023년 11월 30일(목)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주최 손잡고 전국금속노동조합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박주민, 우원식, 이탄희 의원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